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한기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123

발의연월일: 2024. 7. 23.

발 의 자:한기호·김종양·주진우

강선영 · 김성원 · 윤한홍

김정재 • 유용원 • 조은희

신성범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현행법은 군인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군인 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에 필요한 국가의 책무와 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거주지 이전이 잦은 직업군인의 특성상 자녀들 또한 잦은 전학과 학교 적응 문제 등의 고충이 반복되고 있음. 무엇보다 군인이 안정적으로 임무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군인 자녀에 대한 교육여건을 더욱 두텁게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군인 자녀를 위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전국 각지에서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과 그 가족에 대한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함.

또한 매년 국군의 날 직전 주의 금요일을 군인 가족의 날로 지정하

여 군인 가족의 희생과 헌신을 국민에게 알리고, 군인 가족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갖추고자 함.

한편 시중 대비 저가로 판매되는 군 매점 상품의 재판매 문제가 언론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제기되어 왔으나, 현행법상 군 매점 상품의 재판매 금지조항이 없어 문제를 식별하더라도 이를 제재하는 데 한계가 있었음. 이에 군인복지시설 이용대상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- 가. 군인 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군인 자녀를 위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및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군인 자녀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(안 제11조의2).
- 나. 군인복지시설 중 군 매점 상품 등을 재판매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군인복지시설 이용대상의 준수사항을 규정함(안 제15조 신설).
- 다. 군인 가족의 희생과 헌신을 국민에게 알리고, 군인 가족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하기 위해 매년 국군의 날 직전 주의 금요일을 군인 가족의 날로 정함(안 제17조 신설).

법률 제 호

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군인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의2 중 "학교를 설립하는 자"를 "학교를 설립하는 자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4에 따른 학교를 지정 및 운영하는 자"로 한다.

제15조를 제16조로 하고,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5조(군인복지시설 이용대상의 준수사항) ① 군 매점 등 군인복지시설 이용대상은 군 매점 상품 등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7조(군인 가족의 날) ① 군인 가족의 희생과 헌신을 국민에게 알리고, 군인 가족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하기 위하여 매년 국군의 날직전 주 금요일을 군인 가족의 날로 정한다.
 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군인 가족의 날 그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
 - ③ 제2항에 따른 행사 등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1조의2(교육시설에 대한 지원	제11조의2(교육시설에 대한 지원
등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군	드)
인 자녀의 교육여건을 개선하	
기 위하여 「초・중등교육법」	
제2조에 따른 <u>학교를 설립하는</u>	<u>ठ</u> ो
<u>자</u> 에게 교육운영 등에 필요한	교를 설립하는자 또는 같은 법
지원을 할 수 있으며, 예산의	시행령 제91조의4에 따른 학교
범위에서 교육시설의 설치 및	를 지정 및 운영하는 자
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	
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	
<u><신 설></u>	
<u>제15조</u> (노후설계 교육) (생 략)	상품 등을 재판매하여서는 아 니 된다. 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. 제16조(노후설계 교육) (현행 제1 5조와 같음)

<신 설>

제17조(군인 가족의 날) ① 군인
가족의 희생과 헌신을 국민에
게 알리고, 군인 가족에 대한
합당한 예우를 하기 위하여 매
년 국군의 날 직전 주 금요일
을 군인 가족의 날로 정한다.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군
인 가족의 날 그 취지에 맞는
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
다.
③ 제2항에 따른 행사 등 사업의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
부장관이 정한다.